

## 제5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10. 24.(월) 15: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

⑤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6 의결사항**

**가. 2010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건**

- (2011-59-246)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2010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주)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 등 4개사**

- (2011-59-247)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7조에 의거, '11. 11. 11일 ~ '12. 1. 27일 중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재허가 기간

- (주)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 등 3개사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주)영서방송의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심사결과, 영서방송은 '재정 및 기술적능력' 항목에서 재정능력과 관련하여 '미흡'으로 평가됨에 따라, 재정적 능력의 개선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하므로 허가유효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여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

② 재허가 조건

사업자명	재허가 조건 내용
공 통 (4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li> <li>○ 매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li> <li>○ 재허가 신청 시 제출된 디지털전환 관련 계획을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li> </ul>
(주)영서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li> </ul>

**다.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건 - (2011-59-248~280)**

-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제1항에 의거,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행위로 인하여 시청자의 불만을 유발한 3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해당 사업자명 및 조치내용 >

대상사업자	조치내용
(주)씨앤엠 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울산케이블티브이 등 2개 사업자	시정명령과징금(1500만원) 병과 처분
(주)씨앤엠 마포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북부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경동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우리케이블티브이, (주)씨제이헬로비전 중앙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경남방송,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주)티브로드 수원방송 등 9개 사업자	시정명령
(주)씨앤엠 중랑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노원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서서울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강동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경기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용산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송파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동서울케이블티브이, (주)씨제이헬로비전 가이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충남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영남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금정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 남인천방송(주) 등 15개 사업자	경고
(주)씨앤엠 서초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주)씨제이헬로비전 미산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대구동구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영동방송, (주)티브로드서부산방송, (주)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 등 7개 사업자	주의

라. 2011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 (2011-59-281)

-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방송사업자(153개 사업자, 340개 채널)의 2010년 방송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2011년 방송평가」 개요

- 방송평가 대상 기간 : 2010. 1. 1 ~ 12. 31
-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 총 153개 사업자 340개 채널

	지상파			SO	위성		PP		합 계
	TV	R	DMB		일반	DMB	보도	홈쇼핑	
사업자 수 (채널수)	47개 + 3개 (DMB전용) (TV 63개, R 155개, DMB 19개)			94개	1개	1개	2개	5개	153개 (340개)

② 「2011년 방송평가」 결과 주요 내용

㉠ 지상파

- (지상파TV) 전년 대비 KBS-2의 평가점수 크게 상승, KBS-1 및 SBS는 소폭 하락, MBC는 소폭 상승
- (지역민방) 제주JIBS, 울산UBC, 대구TBC, 전주JTV, 대전TJB, 경인OBS는 전년 대비 상승을 보인 반면, 강원GTB, 부산KNN, 광주KBC, 청주CJB는 하락

- (지상파 라디오) 심의제재 위반건수가 적고, 프로그램 편성변화가 많지 않아 대부분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는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음

㉔ 비지상파(지상파 DMB포함)

- (MSO) CJ헬로비전 계열사가 합병이후 교육비 및 방송기술 투자를 크게 늘려 점수가 대폭 상승(전년 대비 6.7% 증가), 가장 높은 평가점수 기록(81.3점)
- (위성방송) 법령 준수 여부 및 여성고용 항목점수의 상승으로 소폭 상승(전년 대비 1.44% 증가)
- (보도PP)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약간 하락(매경 1.24%, YTN 2%), 전년과 마찬가지로 MBN(82.44점)의 평가점수가 YTN(79.37점)보다 높음
- (홈쇼핑PP) 우리홈쇼핑을 제외한 4개 사업자 전부가 평가점수 상승
- (지상파 및 위성 DMB)
  - 지상파계열 DMB는 지상파와 법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지상파 수중계 역할을 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평가결과와 동일한 순
  - 비지상파계열 DMB 사업자 중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U1 미디어가 가장 높은 점수(76.8점)를 기록하였으나, 방송법 위반 증가 등으로 점수는 하락(전년대비 6.8% 하락)
  - 위성DMB는 경영투명성과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실적이 저조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 소폭 하락(전년대비 1.8% 하락)

7] 보고사항

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 방송법시행령 제6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세부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을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접수함

※ 수정내용 : ‘다만, 자료화면을 제공받은 자가 중계방송권 권리표시(5초이상 자막) 미이행 또는 뉴스보도·해설 등 정규 프로그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중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정규로 편성된 뉴스 프로그램’으로 수정

○ 주요내용

◇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4개의 금지행위\* 유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명시

\* ①방송수단 확보(국민전체가구수의 75/100 이상, 올림픽·월드컵은 90/100 이상), ②실시간 방송 실시, ③중계방송권 판매 또는 구매의 거부·지연 금지, ④뉴스보도·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 제공

- ① **(방송수단 확보)** 중계방송권자가 방송수단(자가 또는 임대)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가시청 가구수의 구체적 계산방법 및 검증 등에 관하여 규정
- ② **(실시간 방송)** 중계방송권을 확보한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국민관심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여야 하지만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
  - 재난방송, 비상사태, 다수 행사로 나뉘어져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 천재지변, 법원의 판결, 실시간 방송 필요성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방통위가 인정하는 경우
- ③ **(중계방송권 거래 거부·지연 금지)** 중계방송권 판매·구매 협상 요청에 3회 이상 불응 하거나, 판매자가 현저히 높은 판매가격 설정 또는 차별적 조건을 제시 하는 행위 등을 거래 거부·지연 행위로 규정
  - 다만, 구매자측 제시가격·조건 등이 판매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구매자의 시설·인력 문제에 따른 방송 송출 불가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판매자의 권리행사가 곤란한 경우 등 예외 인정
- ④ **(자료화면 제공)** 중계방송권자등이 국민관심행사의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공 기준을 제시
  - 올림픽·아시안게임은 1일 최소 4분 이상, 월드컵 등 단일종목은 2분 이상 자료 화면을 무료로 제공
  - 다만, 자료화면을 제공받은 자가 중계방송권 권리표시(5초이상 자막) 미이행 또는 뉴스보도·해설 등 정규로 편성된 뉴스 프로그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예외 인정
- ⑤ 향후 추진계획
  - 행정예고, 부처 협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1.11월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및 규제위 규제심사 : '11.12월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고시안 확정 및 공포 : '12.1월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 개선 등을 반영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상학 통신정책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내용
  - ①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 확대(안 제2조제2·3항)

-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

②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완화(안 제28조 별표2)

- 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쉽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검토된 기능계 자격자(기능장, 기능사)를 기술인력 요건에 추가

③ 별정부가통신사업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제도 개선(안 제31조제1·2항)

-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신고 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MVNO(별정1·2·4호 중 무선재판매 사업자)가 등록 시 제출한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7일 이내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하도록 함

④ 이용자 피해 확인 절차 마련(안 제44조, 제45조 별표4)

-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 보존과 피해사실 통지를 시정조치 사항에 추가하고, 그 이행기간을 신설

⑤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 구체화(안 제51조의2제3항)

- 심사기준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 보안대책의 적정성, 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등으로 구체화 하여 규정

⑥ 향후 일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11. 10월 ~ 11월
-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 : '11. 11월 ~ 12월
-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제출 : '12. 1월

**다.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이동전화 소량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 계획적인 통신소비 유도 등을 위해 마련한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이상학 통신정책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내용

① 선불요금제 시장의 경쟁 촉진

- MVNO와 이통사간 적정 도매제공 대가가 산정되어 MVNO가 경쟁력 있는 선불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MVNO, 제조사, 유통업체 등이 저렴한 선불폰을 유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이통사의 단말기 인증방식 개선("블랙리스트 도입") 추진
-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선불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 도입 추진

② 선불요금제 가입·충전 편리성 제고

-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선불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 USIM 구입만으로 선불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의 경우 1인당 가입가능한 회선 수 제한을 완화(1인 1회선→1인 2~3회선)
- 선불충전카드 이외 온라인 충전, 은행이체 등 다양한 충전 방법을 활성화
- 선불카드 취급 장소를 편의점 등으로 확대하고 선불요금제 가입 시 충전방법에 관한 정보를 SMS로 제공

③ 적용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요금제 출시 유도

- 음성, SMS 이외 무선인터넷,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등 선불요금제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
- 스마트폰 이용 고객을 위한 선불 데이터 정액제를 출시토록 하고 선불요금제의 음성통화료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

④ 선불요금제 홍보 및 부당영업행위 방지

- 선불요금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언론, SNS, 반상회지, 이메일 요금 고지서의 배너 등을 활용하여 홍보 추진
- 선불폰 개통 거부, 일정 금액 이상 충전 강요 등 통신사의 부당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
- 이동전화 가입자 통계를 선·후불로 분리하여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표

⑤ 선불요금제 활성화방안 과제별 추진일정

	세부 과제	추진 일정
추진과제 (1)  선불 요금제 시장의 경쟁 촉진	① MVNO의 선불요금제 출시 확대 기반 조성 - MVNO-이통사간 적정 도매제공 대가 산정 지원	'11년 7월 ~
	② 저렴한 선불폰 유통 기반 조성 - 이통사의 단말기 인증방식 개선을 통해 MVNO, 제조사 직접 판매 등 단말기 유통방식을 다양화	'12년 상반기
	③ 선불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번호이동성 도입 추진	도입방안 마련 ('12년 1/4분기)
	세부 과제	추진 일정
추진과제 (2)  선불 요금제 이용 편리성 제고	① 선불요금제 가입절차 개선 - 온라인을 통한 선불요금제 가입 절차 마련	'11년 4/4분기 ~
	- 가입회선 수 제한 완화	'11년 4/4분기 ~
	- 선불 USIM 단독 개통 활성화	'11년 10월 ~
	② 선불요금제 충전 편리성 제고 - 다양한 충전방식 활성화	'11년 4/4분기 ~
	- 충전카드 판매장소 확대	'12년 하반기 ~

	- 충전방식 안내 강화	'11년 9월 ~
추진과제 (3) 선불 요금제 적용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요금제 출시	세부 과제	추진 일정
	① 선불요금제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11년 4/4분기 ~
	② 다양한 선불요금제 출시 및 선불요율 인하 유도	'11년 4/4분기 ~
추진과제 (4) 선불 요금제 관련 부당영업행위 방지	세부 과제	추진 일정
	① 선불요금제 운영실태 조사 및 시정	'12년 하반기
	② 선불요금제 취급률 개선	수시
	③ 선후불 요금제 가입자 통계 분리·공표	'11년 4/4분기 ~
추진과제 (5) 선불요금제 홍보	세부 과제	추진 일정
	①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수시

**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과 방송장비의 국내 수요기반 확대를 독려하고, '11.12월 방송 예정인 종편 PP에 대한 방송평가 실시를 위해 마련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내용

**① 디지털 전환 실적**

- '운영영역'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지상파는 '13년, SO-위성은 '15년 방송실적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배점은, 지상파TV 100점(총점 900점→1,000점), SO-위성 50점(총점 500→550점)

**② 인증방송장비**

- '운영영역'의 「방송발전을 위한 노력 / 방송기술투자 평가」 항목에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 제품 투자에 대해 평가를 추가
- 배점은 지상파 TV 5점, 그 외 매체는 지상파 TV의 2/3로 환산
- ※ '방송기술투자평가' 항목의 배점 : 지상파 TV(30점), 지상파 R 및 비지상파(20점)

**③ 종합편성 PP**

- 종합편성을 행하는 자이므로 지상파와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되, 지상파와 비교를 통한 서열화 논란 등을 고려해 배점과 일부항목에 차이를 둠
- 모든 영역에서 지상파(900점)와 보도 PP(500점)사이의 중간적 배점을 적용하여 총점 700점으로 배점
- ※ 지상파와 종편 PP는 모두 종합편성을 행하는 자이긴 하나, 지상파 종편(무료방송)과 비지상파 종편PP(유료방송)은 이용 매체가 다르고, 종편PP가 신규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과 배점에서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방송법과 승인조건 등 종편 PP에 대한 현행 규제 사례를 종합할 경우, 종합편성 PP는 소유규제와 편성규제에서는 지상파와 PP의 중간, 광고규제에서는 PP와 동일하나 지상파

보다는 약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등 전반적으로 지상파와 PP의 중간적 규제가 적용

- 또한, 매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영역의 '매체특성에 따른 편성 적정성' 항목에서 '제작프로그램 편성' 평가항목을 신설

· 기존 PP의 구매위주 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편 PP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능력에 대한 평가(구매편성비율/제작편성비율)를 신설

④ 평가 적용 시점 : '12년 방송내용에 대한 '13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⑤ 향후 추진 일정

- 입법예고, 규제위 심사 등 : '11. 10월 말 ~ 12월 중

- 위원회 의결, 관보 게재 및 공포 : '11. 12월 중 ~ 12. 31

⑧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 11. 11(금).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7:35)